

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
의안 번호	18872
----------	-------

제안연월일 : 2026. 5.

제안자 : 국토교통위원장

1. 대안의 제안경위

건명	의안번호	발의자	회부일	회의정보	
				상정	소위심사
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	2213190	이훈기의원 등 10인	2025.9.24.	상정	제429회 국회(정기회)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('25.11.18.)
				소위 심사	제434회 국회(임시회) 제1차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('26.4.15.)
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	2218215	복기왕의원 등 12인	2026.4.10.	-	※ 소위원회 직접회부('26.4.13.)
				소위 심사	제434회 국회(임시회) 제1차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('26.4.15.)

제434회 국회(임시회) 제3차 국토교통위원회(2026. 4. 16.)는 위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「국회법」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.

2.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드론 산업은 기술 발전에 따라 기체 성능과 운용기법이 빠르게 고도화되면서 취미·레저 분야를 넘어 촬영, 측량, 시설점검 등 다양한

산업 분야에서 폭넓게 활용되고 있음.

그러나 누구나 손쉽게 드론을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관련 법령을 위반한 불법비행 사례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. 특히, 원자력발전소, 군사시설, 국가중요시설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, 국가안보를 위해 비행이 제한되거나 금지된 구역에서 드론 등 초경량비행장치를 무단으로 비행시키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, 이에 대한 보다 엄정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음.

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비행금지구역에서 드론 등 초경량비행장치를 비행시킨 자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나, 현행 제재 수준만으로는 불법비행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재발을 억제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비행금지구역에서 승인 없이 드론 등 초경량비행장치(무인자유기구(무인항공기)를 제외)를 비행시킨 자에 대해 보다 강력한 제재 근거를 마련함으로써, 국민안전과 국가안보에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불법비행 행위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고, 안전한 드론 운용환경 조성 및 국민의 안전의식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161조제2항제1호의2 신설 등).

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항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1조제2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“제2항제2호”를 “제2항제1호의2 및 제2호”로 한다.

1의2. 제127조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비행금지구역에서 초경량비행장치(무인자유기구는 제외한다)를 비행시킨 사람

제166조제3항제5호 중 “제161조제4항제2호”를 “제161조제2항제1호의2·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61조(초경량비행장치 불법 사용 등의 죄) ① (생 략)</p> <p>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</p> <p>1. (생 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2. (생 략)</p> <p>③ (생 략)</p> <p>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다만, <u>제2항 제2호</u>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.</p> <p>1. ~ 3. (생 략)</p> <p>제166조(과태료) ① . ② (생 략)</p> <p>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</p>	<p>제161조(초경량비행장치 불법 사용 등의 죄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1의2. 제127조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비행금지구역에서 초경량비행장치(무인자유기구는 제외한다)를 비행시킨 사람</u>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----- ----- -----<u>제2항 제1호의2 및 제2호</u>----- -----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66조(과태료) ① .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</p>

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1. ~ 4. (생략)

5. 제127조제3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한 사람(제161조제4항제2호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)

6.·7. (생략)

④ ~ ⑦ (생략)

-----.

1. ~ 4. (현행과 같음)

5. -----

-----제161조
제2항제1호의2·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-----

6.·7. (현행과 같음)

④ ~ ⑦ (현행과 같음)